학생역량강화지원위원회 규정

제정 2017. 06. 2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의 학생역량강화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역량강화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재개발원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미래인재개발센터장,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②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제3조(임무 및 임기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총괄한다.
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1. 교수법 및 학습법 연구·개발, 자문, 교육정책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
2.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연구·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e-러닝 시스템 개발·운영, 교육매체 및 콘텐츠 기획·제작에 관한 사항
4. 교수/학습/비교과/e-러닝 관련 만족도 조사, 분석 및 평가, 개선 반영에 관한 사항
5. 시청각 기자재 관리 및 수업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서면결의 할 수 있다.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,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평가활용)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에 따라 하되, 1년 단위로 평가 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년도에 반영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284, 2017.06.29)
이 규정은 2017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